

Deloitte.

**세무 및 관세
뉴스**

2025년 1월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주요 이슈 하이라이트

세무행정 (Tax Administration)

- 세무총국은 등록, 신고, 세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공급자 정보를 공지한다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 부동산 양도로 인한 CIT 신고
- 추가 설비 투자 시 CIT 인센티브 적용 여부
-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 장소 변경에 따른 CIT 인센티브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이전 비용은 CIT 세무상 비용 인정 불가

간접세 (Indirect Tax)

- 국회의 제 174/2024/QH15 호 결의에 따른 부가가치세(VAT) 감면 정책의 세부 규정을 위한 제 180/2024/NĐ-CP 호 시행령
- 대리 수금 및 지출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 및 VAT 신고 지침
- 증정품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 및 VAT 정책
- 고객 적립 포인트 사용 여부에 따른 상품 판매 시 VAT 적용
- 수출가공기업의 경우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 시점 결정
-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는 환급된 VAT의 회수
- VAT 매입세액 환급이 고려될 수 있는 경우
- 개인소득세(PIT) 환급 신청서 제출 기관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 개인이 참여하는 사업 협력에 대한 PIT 과세 정책을 안내
- 장인·장모에 대한 PIT 기본 공제 적용을 안내
- 외국인 전문가의 PIT 비과세 소득 범위
- 베트남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지역의 개인에 대한 PIT 신고 시점 및 기본 공제 적용을 규정한다.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벨라루스 공화국 정부 간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협정 승인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동티모르 민주공화국 정부 간 외교관 및 공무 여권 소지자 비자 면제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 베트남 내 상품 판매 중개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계약자세

Liên hệ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Bản tin Thuế & Hải quan dành cho mục đích tham khảo chuyên môn, không phát hành hoặc bán trên thị trường

주요 이슈 하이라이트

무역 및 관세 (Trade & Customs)

- 중화인민공화국산 일부 품력 발전 타워 제품에 대한 공식 반덤핑 조치 적용
- 국제 특송을 통한 수입 물품의 수입세 및 VAT 면제 규정 폐지
- H 형강 제품 중 중화인민공화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 조정
- 특수 전자 장비로 인정된 상품은 VAT 세율 인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연료 및 윤활유에 대한 환경보호세
- VAT 감면 조치 지속 시행

법률 및 라이선스

- 호치민시 소매점 허가 절차 간소화

Liên hệ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Bản tin Thuế & Hải quan dành cho mục đích tham khảo chuyên môn, không phát hành hoặc bán trên thị trường

조세관리 **지침문서**

세무총국은 등록, 신고, 세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공급자 정보를 공지한다

세무총국은 베트남에서 등록, 신고, 세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공급자 목록을 은행 본점 및 중개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에 통보하는데, 해당 목록에는 Agoda International Pte. Ltd., Paypal Pte. Ltd., Airbnb Ireland Unlimited, Booking.com BV가 포함된다.

세무총국은 은행 본점 및 중개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해당 해외 공급자 목록을 각 은행 지점에 전달하여, 지점에서 해외 공급자와의 거래 시 세금 신고, 원천징수 및 대납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2024년 12월 31일 세무총국의 제 6369/TCT-DNL호 공문)



Liên hệ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Bản tin Thuế & Hải quan dành cho mục đích tham khảo chuyên môn, không phát hành hoặc bán trên thị trường



법인소득세 (CIT) 지침문서

부동산 양도로 인한 CIT 신고

회사가 매출-비용 방식으로 CIT를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CIT 신고서를 거래 발생 시마다(제 02/TNDN호 양식)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CIT 정산 신고서(제 03/TNDN호 양식)만 제출하고 분기별로 CIT를 임시 납부하면 된다. 반면, 회사가 매출-비용 방식으로 CIT를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CIT 신고서를 거래 발생 시마다 제출해야 한다.

(2025년 1월 7일 세무총국의 제 72/TCT-CS호 공문)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 장소 변경에 따른 CIT 인센티브

회사가 비수출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 장소를 비우대 지역에서 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제12/2015/NĐ-CP호 시행령 제1조 제18항에 따른 신규 투자 프로젝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2025년 1월 3일 Hai Duong 세무국의 제87/CTHDU-TTHT호 공문)

추가 설비 투자 시 CIT 인센티브 적용 여부

회사가 투자 프로젝트가 이미 운영 중인 상태에서 생산-경영 활동을 위해 추가로 기계 및 설비를 도입하더라도, 해당 도입이 정기적인 투자 활동에 해당하지 않거나 확장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계 및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CIT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동일 과세 기간 내에 CIT 우대 세율 및 면세-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가장 유리한 CIT 인센티브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5 1월 14일 제 581/CTBDU-TTHT 호 공문)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이전 비용은 CIT 세무상 비용 인정 불가

회사가 베트남에서 근무할 외국인 개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베트남 노동법에 따라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동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노동허가 발급 이전에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CIT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Hai Phong 세무국의 2024년 12월 17일 제5031/CTHPH-TTHT호 공문)

Liên hệ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Bản tin Thuế & Hải quan dành cho mục đích tham khảo chuyên môn, không phát hành hoặc bán trên thị trường

간접세 지침문서

국회의 제174/2024/QH15호 결의에 따른 부가가치세(VAT) 감면 정책의 세부 규정을 위한 제 180/2024/NĐ-CP 호 시행령

2024년 12월 31일, 베트남 정부는 제180/2024/NĐ-CP호 시행령("제180호 시행령")을 공포하여 제174/2024/QH15호 결의에 따른 VAT 감면 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10% VAT 적용되어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제외 대상:

다음 그룹의 상품 및 서비스(제180호 시행령의 부록 I 참조):

- 정보 기술 및 통신
- 금융 서비스(은행, 증권, 보험)
- 부동산 사업
- 금속 제조, 주조 금속 제품, 광물 채굴(석탄 제외), 코크스 제조, 정제된 석유, 화학 제품
- 특별 소비세가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VAT 감면율

- 공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경우, 적격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8% 세율이 적용된다.
- 수익 비율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경우, 적격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세금 계산서 발행 시 20% 감면된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시행 절차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때, 각 상품 및 서비스의 세율을 명시하거나 세금 계산서에 직접 감면액을 기재한다(제180호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 및 서비스를 법령 180의 부록 IV에 따른 01 양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신고한다.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정부의 2024년 12월 31일 제 180/2024/NĐ-CP 호 시행령)



Liên hệ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Bản tin Thuế & Hải quan dành cho mục đích tham khảo chuyên môn, không phát hành hoặc bán trên thị

간접세 지침문서

고객 적립 포인트 사용 여부에 따른 상품 판매 시 VAT 적용

고객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프로모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법 규정에 부합하는 프로모션
프로그램에 따라 고객이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VAT 과세 가격은
제219/2013/TT-BTC호 시행규칙
제7조 제22항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적립 포인트 사용 금액(고객이
할인받은 포인트 금액)은 고객을 위한
상업적 할인으로 간주된다.
제123/2020/NĐ-CP호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행되는 세금
계산서에는 상품·서비스의 총 금액,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 금액, VAT 과세
가격, 부과된 VAT 금액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 프로모션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여 구매한
상품·서비스가 프로모션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포인트 사용
금액을 상품·서비스 판매 가격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VAT
과세 대상 금액은 고객에게 제공된
상품·서비스의 총 금액이며, 적립
포인트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VAT가 부과된다.

고객이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VAT 과세 가격을 상품·서비스의
전체 공급가액으로 인식해야 하며, 적립
포인트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상태로 VAT
세금 계산서에 기재해야 한다. 동시에, 고객의
적립 포인트는 공급된 총 상품·서비스
금액(VAT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적립 포인트 금액은 제123/2020/NĐ-
CP호 시행령 제10조 제15항에 따라
고객에게 발행하는 VAT 세금 계산서의 선택
기재 항목으로 표시될 수 있다.

회사가 프로모션 프로그램에 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적립 포인트를 조직
또는 개인에게 판매할 때 해당 조직이나
개인이 해당 포인트를 프로그램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VAT 세율
10%를 적용하여 VAT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는 제219/2013/TT-BTC호
시행규칙 제11조(2013년 12월 31일 재무부
발행)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세무총국의 2024년 12월 30일
제6342/TCT-CS호 공문)



Liên hệ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Bản tin Thuế & Hải quan dành cho mục đích tham
khảo
chuyên môn, không phát hành hoặc bán trên thị

간접세 지침문서

수출가공기업의 경우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 시점 결정

회사가 수출가공기업으로서 규정에 따라 VAT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수출 상품 판매 시 세금 계산서 발행 시점은 구매자에게 재화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다. 이는 대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Quang Nam 세무국의 2024년 12월 27일 제11043/CTQNA-TTHT호 공문)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는 환급된 VAT의 회수

세무국이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는 수출 상품·서비스에 대한 VAT 환급을 이미 수행한 경우, VAT 법 및 세법 관리 규정에 따라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는 환급된 VAT를 회수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2025년 1월 8일 제99/TCT-CS호 공문)

VAT 매입세액 환급이 고려될 수 있는 경우

사업장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수출 상품·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건설·고정자산 관련 매입 VAT가 수출 상품·서비스 생산·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투자·건설·고정자산 관련 매입 VAT를 합산하여 수출 상품·서비스에 대한 VAT 환급 대상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제146/2017/NĐ-CP호 시행령 및 제25/2018/TT-BTC호 시행규칙에 따른다.

(세무총국의 2025년 1월 10일 제147/TCT-CS호 공문)



Liên hệ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Bản tin Thuế & Hải quan dành cho mục đích tham khảo chuyên môn, không phát hành hoặc bán trên thị trường



개인소득세 (PIT) 지침문서

개인소득세(PIT) 환급 신청서 제출 기관

개인이 PIT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특정 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해당 회사에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개인은 해당 회사가 소속된 세무국에 연말정산 신고서 및 (해당되는 경우)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2024년 12월 31일 제6368/TCT-DNNCN호 공문)

직원 상여금에 대한 PIT 원천징수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현금 또는 비현금 포함, 단 제111/2013/TT-BTC호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e)호에 명시된 상여금은 제외한다)은 PIT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제111/2013/TT-BTC호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PIT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 내용이 특정 개인이 아닌 전체 근로자 집단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소득은 제111/2013/TT-BTC호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đ.3.2)호의 규정에 따라 PIT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4년 12월 5일 제64688/CTHN-TTHT호 공문)

Liên hệ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Bản tin Thuế & Hải quan dành cho mục đích tham khảo chuyên môn, không phát hành hoặc bán trên thị trường



개인소득세 (PIT) 지침문서

개인이 참여하는 사업 협력에 대한 PIT 과세 정책을 안내

회사가 개인과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른 전체 매출에 대해 VAT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개인에게 매출을 배분할 때 회사는 개인의 매출에 대한 PIT를 원천징수하고, 제40/2021/TT-BTC호 시행규칙 부록 1에 규정된 업종별 비율을 적용하여 대신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사가 개인(개인 사업자 또는 가계 사업자)과 사업 협력을 진행하며, 해당 개인이 2019년 세법 관리법 제5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기존에 영위하는 업종이 회사와 협력하는 업종과 동일한 경우, 회사와 개인은 실제 협력 사업의 성과에 따라 각각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2024년 12월 26일
제6274/TCT-CS호 공문)



Liên hệ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Bản tin Thuế & Hải quan dành cho mục đích tham khảo chuyên môn, không phát hành hoặc bán trên thị trường



개인소득세 (PIT) 지침문서

장인·장모에 대한 PIT 기본 공제 적용을 안내

제111/2013/TT-BTC호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d)목에 따라, 장인과 장모는 PIT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과세연도 동안 장인·장모에 대한 기본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세금 정산 시 부양 의무가 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공제 등록이 필요하다.

(세무총국의 2024년 12월 18일 제6068/TCT-DNNCN호 공문)

베트남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지역의 개인에 대한 PIT 신고 시점 및 기본 공제 적용을 규정한다.

베트남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거주자인 외국인이 처음으로 베트남에 입국하고, 베트남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첫 해 연말 정산 시 베트남에 입국한 달부터 연말까지의 전 세계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해야 하며, 베트남에서 근무한 기간(월 단위 기준)에 대해 본인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다.

해당 외국인은 세무 당국에 연말 정산 신고 의무를 가진다.

(세무총국의 2024년 12월 12일 제5874/TCT-DNNCN호 공문)

외국인 전문가의 PIT 비과세 소득 범위

ODA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인 전문가가 「외국인 전문가 규정」(베트남 총리의 2009년 10월 1일 제119/2009/QĐ-TTg호 결정) 제1장 제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고, 2009년 11월 20일부터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베트남 기획투자부 및 재정부의 2010년 5월 28일 제12/2010/TTLT-BKHĐT-BTC호 공동 회람 제4조에 따라 적법한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면, ODA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급여 및 보수 소득에 대해 PIT 면제를 적용받는다..

(세무총국 2024년 12월 6일 제5720/TCT-DNNCN호 공문 발행)

Liên hệ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Bản tin Thuế & Hải quan dành cho mục đích tham khảo chuyên môn, không phát hành hoặc bán trên thị trường



Thuế Thu nhập cá nhân kết quả

Việt Nam Cộng hòa Dân Chủ Chủ Nghĩa và Cộng hòa Belarus giữa các nước đối tác về miễn thị thực

Ngày 25 tháng 12 năm 2024, Quyết định số 249/QĐ-CP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Việt Nam Cộng hòa Dân Chủ Chủ Nghĩa và Cộng hòa Belarus đã đồng ý miễn thị thực lẫn nhau. Theo đó, công dân Việt Nam khi đi du lịch đến Belarus và ngược lại, công dân Belarus khi đi du lịch đến Việt Nam sẽ được miễn thị thực. Quyết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kể từ ngày ban hành, áp dụng cho công dân Việt Nam và công dân Belarus khi nhập cảnh Việt Nam và Belarus.

(Quyết định số 249/QĐ-CP ngày 25 tháng 12 năm 2024)

Việt Nam Cộng hòa Dân Chủ Chủ Nghĩa và Cộng hòa Đông Timor giữa các nước đối tác về miễn thị thực

Ngày 25 tháng 12 năm 2024, Quyết định số 248/QĐ-CP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Việt Nam Cộng hòa Dân Chủ Chủ Nghĩa và Cộng hòa Đông Timor đã đồng ý miễn thị thực lẫn nhau. Theo đó, công dân Việt Nam khi đi du lịch đến Đông Timor và ngược lại, công dân Đông Timor khi đi du lịch đến Việt Nam sẽ được miễn thị thực. Quyết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kể từ ngày ban hành, áp dụng cho công dân Việt Nam và công dân Đông Timor khi nhập cảnh Việt Nam và Đông Timor.

(Quyết định số 248/QĐ-CP ngày 25 tháng 12 năm 2024)



Liên hệ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Bản tin Thuế & Hải quan dành cho mục đích tham khảo chuyên môn, không phát hành hoặc bán trên thị trường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문서

베트남 내 상품 판매 중개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계약자세

회사가 베트남 내에서 자사의 상품 판매 중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외국 공급업체는 외국인 계약자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 VAT 및 법인세 계산을 위한 비율(%)은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지침을 따른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4년 12월 20일 제 31859/CTBDU-TTHT 호 공문)



☎ Liên hệ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Bản tin Thuế & Hải quan dành cho mục đích tham khảo chuyên môn, không phát hành hoặc bán trên thị trường



무역 및 관세 지침문서

중화인민공화국산 일부 풍력 발전 타워 제품에 대한 공식 반덤핑 조치 적용

중화인민공화국산 풍력 발전 타워 제품(HS 코드 7308.20.11 및 7308.20.19)이 2025년 1월 8일부터 베트남으로 수입될 경우, 공식 반덤핑 세율 97%가 적용된다. 단, Jiangsu Zhenjiang New Energy Equipment Co., Ltd.에서 수출하는 제품은 예외로 한다.

공식 반덤핑 조치의 적용 기간은 해당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5년이며, 산업통상부장관의 다른 결정에 따라 변경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산업통상부의 2024년 12월 24일 제3453/QĐ-BCT호 결정)

국제 특송을 통한 수입 물품의 수입세 및 VAT 면제 규정 폐지

2025년 1월 3일, 총리는 국제 특송을 통한 수입 물품의 면세 기준을 규정한 총리 결정 제78/2010/QĐ-TTg호 결정(2010년 11월 30일 공포)에 대한 제01/2025/QĐ-TTg호 결정을 전면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1,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물품에 대한 수입세 및 VAT 면제 규정이 폐지된다.

(총리의 2025년 1월 3일 제01/2025/QĐ-TTg호 결정)

Liên hệ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Bản tin Thuế & Hải quan dành cho mục đích tham khảo chuyên môn, không phát hành hoặc bán trên thị trường



무역 및 관세 지침문서

H 형강 제품 중 중화인민공화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 조정

2024년 11월 25일, 산업통상부는 제3098/QĐ-BCT호 결정을 공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산 H 형강 일부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제2차 재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 Jinxi 그룹 및 관련 회사들은 제2차 재검토 결과에 따라 반덤핑 세율이 22.09%에서 13.38%로 인하된다;
- 그 외 중국산 해당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기타 조직 및 개인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2022년 8월 19일에 공포한 제1640/QĐ-BCT호 결정에 따라 31.24%~33.51%의 반덤핑 세율을 계속 적용받는다.

반덤핑 세율은 2027년 9월 5일까지 적용되며, 산업통상부의 추가 재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산업통상부의 2024년 11월 25일 제 3098/QĐ-BCT 호 결정)

특수 전자 장비로 인정된 상품은 VAT 세율 인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된 상품이 특수 전자 장비로 인정되는 경우 VAT 세율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실제 수입된 상품의 HS 코드 결정은 관세법 및 그 시행을 위한 법규에 따른 품목 분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관세총국은 기업이 VAT 신고를 위한 특수 전자 장비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부에 문의할 것을 권장한다.

(관세총국의 2024년 12월 13일 제6271/TCHQ-TXNK호 공문)



Liên hệ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Bản tin Thuế & Hải quan dành cho mục đích tham khảo chuyên môn, không phát hành hoặc bán trên thị



무역 및 관세 지침문서

연료 및 운할유에 대한 환경보호세

2024년 12월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연료 및 운할유에 대한 환경보호세 부과 수준을 규정하는 제60/2024/UBTVQH15호 결의안을 공포한다. 이에 따라: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환경보호세율을 규정한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환경보호세율은 2018년 9월 26일 공포된 제579/2018/UBTVQH14호 결의안에 따른 환경보호세율표 규정을 따른다.

2024년 12월 30일, 관세총국은 제60/2024/UBTVQH15호 결의안에 따른 환경보호세율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것을 안내하는 제6569/TCHQ-TXNK호 공문을 각 지방 세관에 발송한다.

(2024년 12월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의 제60/2024/UBTVQH15호 결의안 및 2024년 12월 30일 관세총국의 제6569/TCHQ-TXNK호 공문)

VAT 감면 조치 지속 시행

2024년 11월 30일, 국회는 제174/2024/QH15호 결의안을 공포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VAT 감면 조치를 지속 시행할 것을 승인한다. 이에 따라, 관련 세관 절차 시행을 위해 총관세국은 2024년 12월 31일 제6608/TCHQ-TXNK호 공문을 공포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VAT 감면 정책:**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규정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VAT 세율을 2% 인하하되, 통신, 정보기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거래, 금속, 금속 가공품, 광물(석탄 제외), 코크스, 정제 석유, 화학 제품 및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상품 및 서비스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VNACCS/VCIS 시스템 신고 관련:** 2025년 1월 1일부터 등록된 전자 수입 신고서의 "세율/세금 및 기타 적용 코드" 항목에서 **VB235 코드**를 선택하여 VAT 감면 대상 품목에 대해 **8% VAT 세율**을 신고한다.

(2024년 11월 30일 국회의 제174/2024/QH15호 결의안 및 관세총국의 2024년 12월 31일 제6608/TCHQ-TXNK호 공문)

Liên hệ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Bản tin Thuế & Hải quan dành cho mục đích tham khảo

chuyên môn, không phát hành hoặc bán trên thị



법률 및 라이선스 지침문서

호치민시 소매점 허가 절차 간소화

2024년 12월 24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제5949/QĐ-UBND호 결정을 공포하여 호치민시 산업통상국이 관리하는 소매점 허가 및 조정 절차를 업데이트하였다. 특히, 본 결정은 산업통상부와의 협의 절차를 축소하고 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내 소매점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소매업 운영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소매점 이외의 신규 소매점 허가 절차

(편의점 및 미니 슈퍼마켓이 아닌 유형, 100m² 미만이며 쇼핑몰 내 위치하지 않은 경우)

주요 변경 사항:

- 절차: 산업통상부 의견 수렴 절차 생략
- 처리 기간: 기존 48영업일 → 35영업일로 단축
- 제출 서류: 기존 2부 → 1부로 축소

- 허가 절차: (i) 첫 번째 소매점 및 추가 소매점 허가 (편의점 및 미니 슈퍼마켓 제외, 500m² 미만이며 쇼핑몰 내 위치) (ii) 첫 번째 소매점 허가 (편의점 및 미니 슈퍼마켓 제외, 500m² 미만이며 쇼핑몰 외부 위치)

주요 변경 사항:

- 절차: 산업통상부 의견 수렴 절차 생략
- 처리 기간: 기존 20영업일 → 10영업일로 단축
- 제출 서류: 기존 2부 → 1부로 축소

3. 첫 번째 소매점의 면적 증가 조정 절차 (편의점 및 미니 슈퍼마켓 제외, 쇼핑몰 외부에 위치한 500m² 미만의 소매점)

주요 변경 사항:

- 절차: 산업통상부 의견 수렴 절차 생략
- 처리 기간: 기존 20영업일 → 10영업일로 단축
- 제출 서류: 기존 2부 → 1부로 축소

4. 추가 소매점의 면적 증가 조정 절차 (편의점 및 미니 슈퍼마켓 제외, 쇼핑몰 외부에 위치한 100m² 미만의 소매점)

주요 변경 사항:

- 절차: 산업통상부 의견 수렴 절차 생략
- 처리 기간: 기존 48영업일 → 35영업일로 단축
- 제출 서류: 기존 2부 → 1부로 축소.

(호치민 인민위원회의 2024년 12월 24일자 제5949/QĐ-UBND호 결정)

Liên hệ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Bản tin Thuế & Hải quan dành cho mục đích tham khảo

chuyên môn, không phát hành hoặc bán trên thị



Contact us

Vietnam Korean Service Group

Deloitte Global Korean Services Group(KSG)의 일원으로서, 베트남 Korean Services Group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확장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및 언어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 세무, 재무 자문 및 컨설팅을 포함한 폭넓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상주하는 한국어 구사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 팀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한국 기업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회계사
KSG Leader – HCMC office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류경석 회계사
Tax & Legal Director – Hanoi office
+ 84 96 227 8254
kyungryu@deloitte.com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Bui Tuan Minh
Country Tax & Legal Lead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Thomas McClelland
Tax Partn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Tran Quoc Thang
Tax Partner
+84 28 710 14323
qthang@deloitte.com



Pham Quynh Ngoc
Legal Partner
+84 24 710 50070
ngocpham@deloitte.com

Office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
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is a member firm of Deloitte Global. Deloitte Asia Pacific members and affiliates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 more than 100 cities in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In member countries, business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dependently by separate legal entities.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document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and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therefore, no DTTL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or subsidiaries and their employees shall be deemed to, within the scope of the content of this document, provide services or give opinions, professional advice for readers. This document does not constitute advice to the reader and shall not affect other advice provided by any employee of the Deloitte Foundation.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document does not apply to the individual cases of the enterprise.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ial or business situation, you should consult a professional adviso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made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and no member of the Deloitte Companies Network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s, losses incurred directly or indirectly as a result of the reader’s use, publication, dissemination of, or reliance on this material to act, inaction, or make any decisions.